

남 강 하 천 기 본 계 획 수 립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2021. 8



국 토 교 통 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국가하천 남강에 대하여 유역개발 및 도시화, 기상특성 변화, 하천개수사업 등으로 인한 유역의 수리·수문 특성과 하도특성의 변화, 유역내 다양한 욕구에 따른 하천환경적 측면의 여건변화와 하천관리를 위한 미비점 보완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부각됨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당해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조사·분석 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수자원 종합개발 지침 확립하고,
- 국가하천 남강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함

< 표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 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1.3 추진 경위 및 향후 일정

#### 1.3.1 추진 경위

- 2018. 06. : 남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착수
- 2018. 10. : 남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1. 05. 11. ~ 05. 27. :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 2021. 08.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 결정내용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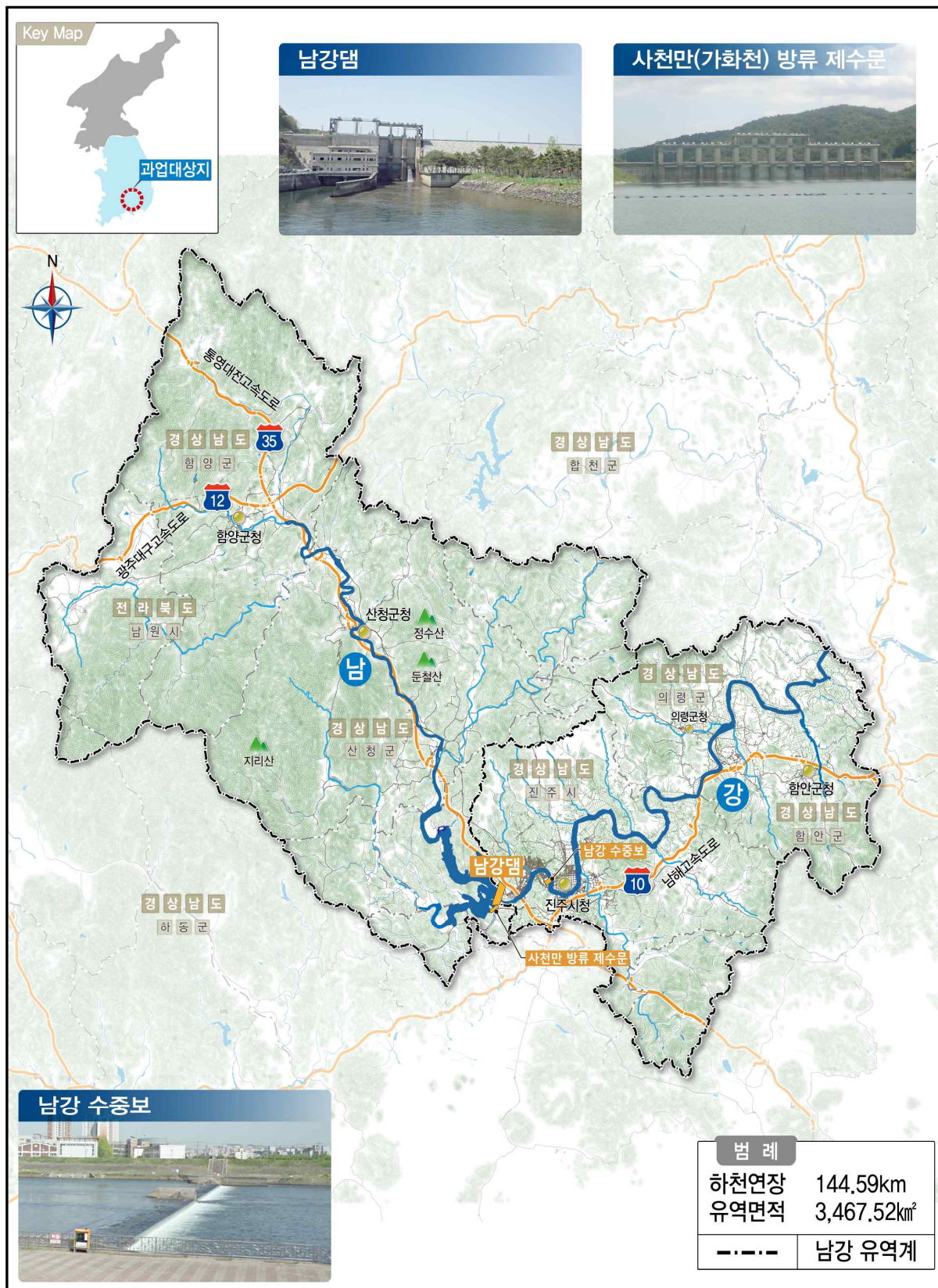
#### 1.3.2 향후 일정

- 202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22. :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 2022.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 1.4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남강 하천기본계획 수립
- 계획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함양위천 합류점~함안군 대산면 낙동강 합류점
  - 국가하천 남강 1개소, L=144.59km(수몰지 26.00km 포함)
  - 경상남도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
- 수 립 기 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승 인 기 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협 의 기 관 : 낙동강유역환경청

( 그림 1-1 ) 위치도



##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 주관행정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위원장 외 총 15인(환경청, 지자체, 관련 전문가 등)

구분	소속	성명	비고
위원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김 ○ ○	-
위 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박 ○ ○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	이 ○ ○	-
"	KEI 환경평가본부 자원에너지평가실	최 ○ ○	-
"	진주시 환경관리과	김 ○ ○	-
"	함양군 환경위생과	박 ○ ○	-
"	산청군 환경위생과	문 ○ ○	-
"	의령군 환경위생과	김 ○ ○	-
"	함안군 환경과	박 ○ ○	-
"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심 ○ ○	-
"	자연보호중앙연맹	이 ○ ○	-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 ○ ○	-
"	의령군 화정면 이장단	하 ○ ○	-
"	함안군 범수면 악양마을	이 ○ ○	-
"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박 ○	-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기간 : 2021. 05. 11. ~ 05. 27.
- 결정사항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 항목·범위·방법, 대안 등

###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 ① 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 (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립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사업계획 면 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2. 토지이용구상안 / 3. 대안 /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생략~
-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 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 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이하 생략~

##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2.2.1 평가항목 결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2017.12,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 12. 22, 환경부」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제시된 [별표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선정함
- 계획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영향정도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으로 설정함
- 또한,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본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은 평가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제외항목으로 설정함
  - 중점(10개 항목), 현황(2개 항목), 제외(9개 항목)

< 표 2-1 > 환경영향평가등 평가항목 선정(제외)

항 목			환경영향평가			선정(제외)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	일반		제외	
계획의 적정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위 및 관련계획의 적정성 검토</li> <li>•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검토</li> </ul>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생훼손, 동물상 서식지 이동, 출현양상 등의 변화가 예상</li> </ul>	
			자연환경자산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 영향 파악</li> </ul>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지질 현황조사 및 흩까기·흩쌓기에 따른 영향분석 및 대책 수립</li> <li>• 토공량에 따른 수급계획</li> </ul>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위락시설 현황 파악</li> <li>•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li> <li>•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 분석</li> </ul>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강우에 따른 토사유출로 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상</li> <li>•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li> </ul>
			수리·수문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환경정비, 제방공사 등에 따른 수리·수문의 변화 파악</li> </ul>
		해양환경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과 연관 없음</li> </ul>		

< 표 2-1 계속 > 환경영향평가등 평가항목 선정(제외)

항 목			환경영향평가			선정(제외)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점	일반		제외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역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li> <li>•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li> </ul>
			대 기 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 배기가스 발생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li> </ul>
			악 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의 특성상 악취발생은 없음</li> </ul>
			온실가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장비 가동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으로 인한 영향 미미</li> </ul>
			토 양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장비투입, 공사인부 투입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li> </ul>
			소음·진동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공사 장비투입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상</li> </ul>
			위생·공중 보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영향평가 대상 외 사업</li> </ul>
			전파장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특성상 전파장해의 요소가 되는 시설계획은 없음</li> </ul>
			일조장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조피해 시설(고층건물) 설치계획은 없음</li> </ul>
	환경기초시설 의 적정성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시행시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li> </ul>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생활, 지정, 건설, 임목폐기물 발생량 검토</li> </ul>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 하천공간관리 계획(기본계획과 비교)</li> <li>•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대책</li> </ul>
			인 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미미</li> </ul>
주 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미미</li> </ul>	
산 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 미미</li> </ul>	



2.2.2 평가대상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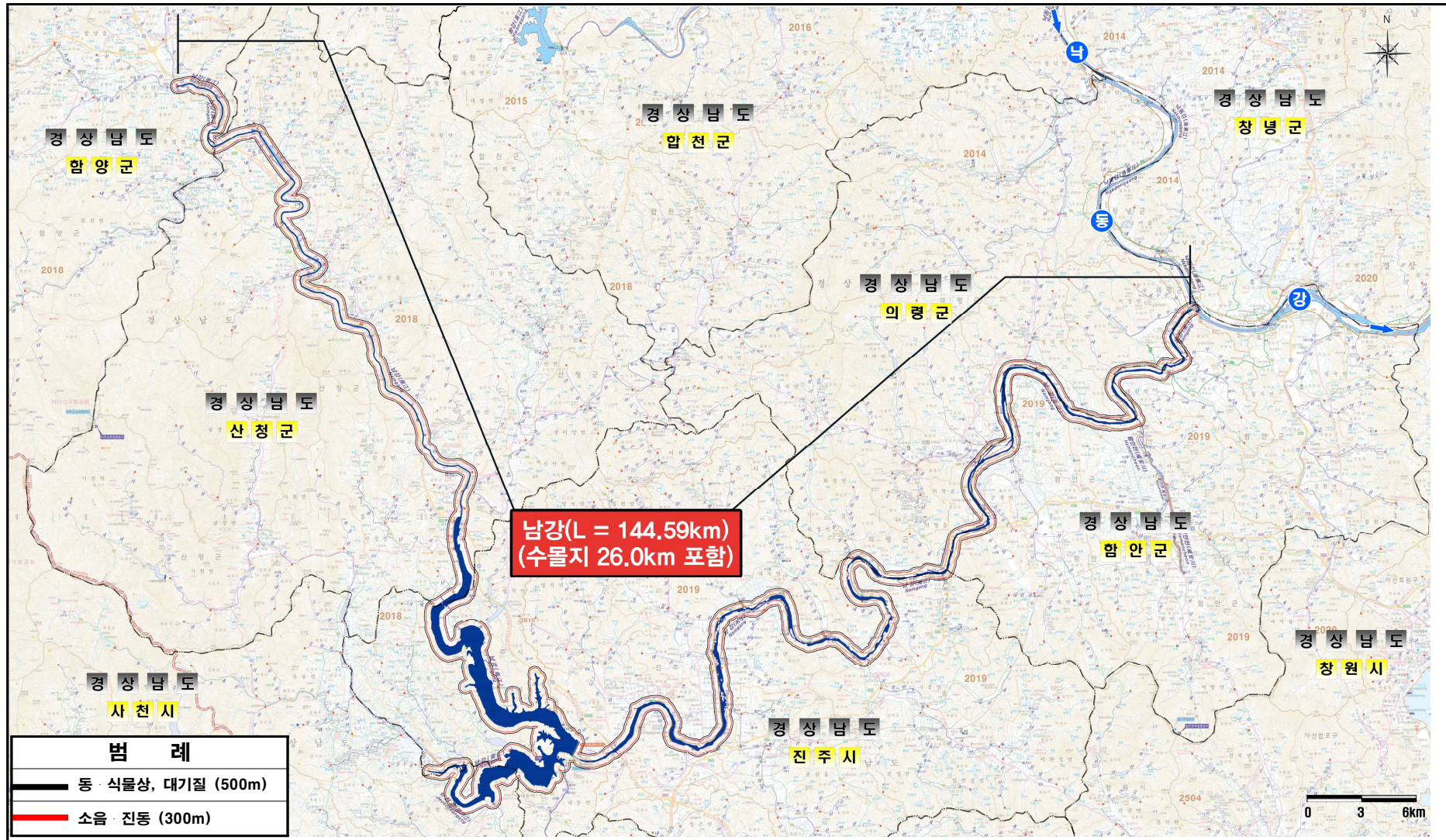
< 표 2-2 >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항 목		평가대상지역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li> <li>• 상위 및 관련계획의 적정성</li> <li>•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li> </ul>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식물상 자연환경 자산</li> <li>•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하천양안 경계로부터 500m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시행으로 인한 식생훼손, 동물상 서식지 이동, 출현양상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li> <li>•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li> </ul>	공사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형·지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li> <li>• 흩쌓기 및 흩깔기 발생으로 지형 변화 지역</li> </ul>	공사시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락·경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변 지역과의 위락·경관영향 발생 지역</li> <li>-하천환경정비지구 등</li> </ul>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 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역 및 주변수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 발생시 유입 가능 수계</li> <li>• 수질오염총량 검토</li> </ul>	공사시 운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리·수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역 및 주변수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환경정비, 제방공사 등에 따른 수리·수문의 변화 파악</li> </ul>	공사시 운영시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역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현황 파악</li> <li>•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li> </ul>	공사시
			대 기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하천양안 경계로부터 500m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토사이동 및 장비투입에 따른 비산먼지, 배기가스 발생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li> </ul>	공사시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폐유 발생 및 지장물 철거 등에 의한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지역</li> </ul>	공사시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하천양안 경계로부터 300m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으로 소음·진동 영향 예상지역</li> </ul>	공사시

< 표 2-2 계속 >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항 목			평가대상지역	평가대상지역 설정 사유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시 주변지역 환경기초시 설과의 연계성	운영시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계획지역	• 공사시 지장물 철거, 훼손수목, 공 사장비 및 공사인부 운영으로 인한 폐유·폐기물 등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공사시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 화가 수반되는 계획지역내 및 주 변지역 • 계획시행에 따른 효율적 토지활용 계획 수립	공사시 운영시

( 그림 2-1 )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2.2.3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등의 설정

- 본 사업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선정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평가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표 2-3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항 목		범 위	방 법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계획의 적정성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 대안 설정·분석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동·식물상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하천양안 경계로 부터 500m이내) 자연환경 자산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현황조사 - 식물상(식생) : 종분포현황, 하천단 면도, 법정보호종 등 - 동물상 : 종분포현황, 개체수, 법정 보호종 등 - 포유류, 조류, 곤충류, 양서파충류 -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예측 및 보전대책 수립	공사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계획수립으로 인한 지형의 변화 및 공법의 적절성 및 안정성 검토 •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현황 파악	공사시
		주변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락·경관	•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계획수립으로 인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	운영시
		수환경의 보전	수 질	• 계획지역 및 주변수계	•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 • 수질(2회) 및 저질(2회) 현황측정 - 조사지점 : 49개지점(수질) 49개지점(저질) - 하천수질(31개 항목) : pH, BOD, COD, DO, SS, TOC, T-N, T-P,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유기인, 납, 6가크롬, ABS, PCB, 총대장균군, PCE, 수은, 유량, 사업화탄소, 1,2-디클로로에탄, 벤젠, 디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DEHP, 안티몬,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 하천저질(13개 항목) : COD, T-N, T-P, Cd, Pb, As, Ni, Hg, Cr+6, Cu, Zn, 강열감량, 입도분석	공사시 운영시

< 표 2-3 계속 >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항 목			범 위	방 법	비 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수환경의 보전	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지역 및 주변수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토사유출, 투입인부에 따른 예측 및 저감대책 수립</li> <li>계획하천이 포함된 수질오염총량지역(남강A'E) 내 오염부하량 검토</li> </ul>	공사시 운영시
			수리·수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지역 및 주변수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조사 및 현지조사</li> <li>제방 등 하천시설물 설치에 따른 수리·수문의 변화 예측</li> </ul>	공사시 운영시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지역 및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하천 주변 기상대 최근 10년 기상 자료 분석 및 영향 검토</li> </ul>	공사시
			대 기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하천양안 경계로부터 500m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조사</li> <li>공사시 토사이동 및 공사차량에 의한 대기영향 예측(모델링 활용) 및 저감 대책 수립</li> </ul>	공사시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지역 및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조사</li> <li>건설장비 투입,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수립</li> </ul>	공사시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지역 및 주변지역 (하천양안 경계로부터 300m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조사</li> <li>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li> </ul>	공사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지역 및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조사</li> <li>계획시행시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현황 및 연계처리 방안 검토</li> </ul>	운영시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조사 및 현지조사</li> <li>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 및 처리대책</li> </ul>	공사시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지역 및 주변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조사 및 현지조사</li> <li>친환경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검토 - 하천기본계획보고서 검토</li> </ul>	공사시 운영시	

#### 2.2.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공개하여, 14일 이상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시
- 또한,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반영토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수렴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등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임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할 계획임

< 표 2-4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법령 근거

#### 제13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생략~

-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14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절차의 생략)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 의견수렴 주체 : 사업지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 :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 1회 이상

< 표 2-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내용

구분	내 용
공고내용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사업지역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망(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
    - : 공고·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 공고·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40일 범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위치하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시·군청, 주민센터 등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임(공람장소는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 각 1개소 이상 설치)
  - 공람장소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평가서초안 열람부’,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것임

나. 주민설명회 개최

- 주민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할 지자체인 함양군, 산청군, 진주시, 의령군, 함안군과 설명회 개최 장소 등에 관해 사전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 2.3 심의 의견서

- 낙동강 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남강 하천기본계획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남강 하천기본계획]

####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 계획범위 : 경남 함양군 유림면 함양위천 합류점 ~ 함안군 대산면 낙동강 합류점
- 계획규모 : 과업연장 144.59m(담수몰지 26.0km 포함)
- 협의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자목 하천기본계획
- 계획수립기관 / 승인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 총괄의견

- 동 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등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하천 남강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을 고려하여 본래의 자연생태계 보존·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심의의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함.
- 대상지역 설정 시 설정사유(사업구역 경계설정 사유 포함)를 상세히 명기하고,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등 관련자료 명시 및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해당 하천의 현황사진(드론사진),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형도(표고 및 경사 분석 자료 포함) 등을 제시
  - 동·식물상 평가대상지역 범위는 분류군에 따른 특성 및 생태계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사업지구 주변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현황을 조사하여 영향 예측 시 누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남강 하천기본계획

## 2. 토지이용 구상안

- 구간별 하천생태 현황을 토대로 구체적인 보전·관리계획 수립하여야 함
  - 하천생태조사 결과 자연도가 높은 구간은 가능한 한 보전하는 방안 강구
- 기존 인공시설물에 대한 치수적·생태적 기능분석을 통한 존치·개설이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 철거하거나 자연 친화적 재료 및 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살리도록 계획 수립하여야 함.
  - ※ 「지속가능한 하천사업 (소규모·전략)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15.3,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기술 지침서(2014, 환경부)」
- 유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유로 변경 구간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

## 3. 대안

- 대안은 3개 이상의 대안을 마련하여 비교·검토한 후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평가준비서에 제시된 단순 Action/No Action 비교만이 아닌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등 이·치수 및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양한 수단적 대안을 복합적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
- 항목별 저감방안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저감방안은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

## 5.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가. 공통

- 현황조사는 사업대상 지역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설정, 예측 모델 입력 및 검증, 사후조사와 비교·검증 등의 목적을 가지는 바, 영향예측 및 사후조사와 연계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조사(문헌, 현지, 탐문 등)시기 및 지점, 항목 및 횟수 등은 계절별, 시간적(주야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함.
- 기존 지침·통계·조사자료 등 문헌 조사 시 5년 이내 가장 최근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며, 조사지점(도면) 및 출처를 표기하여야 함.
  - ※ 제4차 전국자연환경조사 및 전국 내륙습지 정밀조사 등

남강 하천기본계획

**나 . 항목별 심의의견**

**○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계획 하천과의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 및 시설물계획 연계성을 검토·제시

※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풍수해하천환경정비사업 등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동·식물상 조사 시 계절 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시기, 조사지점 및 횡수를 선정하고 조사결과를 지형도에 표기
- 동·식물상 조사 시 하천 구간별로 문헌조사, 탐문조사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사업지역 및 인접 지역의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제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생태자연도 및 식생 현황, 습지 현황 등을 조사·제시 하고 영향 저감방안 제시

※ 겨울철새 동시센서스, 생태·자연도 1등급, 별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진양호 수달서식지), 수변구역, 전국내륙습지 모니터링 지역(유림습지, 남강천2교습지, 대공교습지, 평촌리하도습지, 범학늪, 하촌늪, 내촌늪, 신당리하도습지, 가진리하도 습지, 돈대늪, 소상늪, 악양습지)

**○ 수환경의 보전**

- 치수적 안정성과 하천 생태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 하천 제방 및 호안 증축의 경우 매년 높아지는 홍수위를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제방축조 공사 시 자연생태계 영향도 유발되므로 친환경적 수해위험 저감방안으로써 하천 주변의 나지 등의 홍수터를 매입하여 저류지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제시
- 사업시행 시 오·폐수,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마련
- 하천의 통수단면적 확보 등의 이·치수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통한 수리 영향을 예측하고, 계획홍수위 및 하상고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종단면도 제시
- 계획평면도상에 하천구역(기존 및 변경 구분), 축조 및 인공시설물 설치 등의 하천계획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

남강 하천기본계획

-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 공장, 축사, 주거지 등에서 발생하는 점·비점오염 물질의 하천 유입 차단 방안 검토·제시
-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 검토**
  - 하천의 자연성을 저하시키는 확폭, 제방 및 하도정비 등의 구조물 설치 위주 계획을 지양하고, 최근 침수피해 현황과 원인, 침수범위, 제방 보강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농경지, 가옥 등) 등을 고려하여 친환경적 홍수방어 대안(홍수관리 구역 지정, 천변저류지 등)을 우선 검토
- **환경기준 부합성**
  - 주거지역 등 인근의 정온시설 등 주변 지역에 미치는 대기질 및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걱정 저감방안 마련
-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하천 자연도 평가결과에 따른 토지이용관리대책 수립
  - 지장물 철거과정 또는 공사시 발견될 수 있는 오염 토양의 현황 파악 및 이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제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유인물 배포, 현수막 부착, 마을이장을 통한 홍보, 마을 방송, 유관기관 활용 등)하여 관련사항을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시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시 방역 조치 등 다음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함
  - \* (참고) 코로나19 관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20.2)」 및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
- 군집행사 기피로 대면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이 미진하다고 계획수립기관이나 승인기관장이 판단하는 경우 비대면 설명회(영상 설명, SNS, 기타 정보통신망 등)를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협의기관장에게 통보

남강 하천기본계획

- 설명회에 따른 지역주민의 군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기간 및 시간을 분산하여 대면 설명회를 실시
  - ※ 분산된 기간(날짜 분산) 또는 시간(예, 10시~12시, 13시~15시, 15시~17시)과 충분한 개별 공간(독립공간 또는 충분히 이격된 책상 배치 등)에서 사업자 및 전문가 등이 상주하여 방문자에게 설명
- 설명회 개최 기간 또는 시간을 분산하여 시행하는 경우 및 비대면 설명회를 병행 개최하는 경우 개최 방법과 참여방법, 의견 제출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사전 고지

#### 6. 기 타

- 금회 계획에 반영(신설, 재가설 등)된 개수계획에 대해서 사업의 필요성 등을 기수립 계획과 비교·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
- 동 심의결과를 반영·작성한 평가서의 세부적인 검토과정에서 해당계획으로 인한 불가피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 동 심의의견의 반영결과 및 해당 쪽수를 표로 제시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12.22.)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동 계획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므로 구체적인 실시 설계 내용(축제, 호안, 보 및 낙차공 공법과 위치 등)과 그에 따른 실효성있는 저감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2021. 5.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민간전문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강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본 계획은 경상남도 함양군 유림면 일원에 위치한 국가하천 남강(수몰지 포함 144.59km)의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계획 수립의 타당성 입증 및 최적 대안 선정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해당 하천의 특성(남강댐 상류 및 하류, 수몰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하여야 함
- 계획 대상지역에 남강댐이 포함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이한 하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하류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상류 하류 및 수몰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대안

- 계획수립의 필요성 및 효과
- 구간별로 건설되는 구조물(호안, 제방, 횡적 구조물 등)의 설치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자연환경 및 수리·수문을 연계하여 중점 평가

4.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 없음

5.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의견 없음

2021. 5. 18.

심의위원



• 진주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강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계획 구간 내 하천지역 정비 및 생태현황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환경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여 설정하여야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특이사항 없음

3. 대안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대안을 설정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계획하천 인근에 상수원보호구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등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자연환경의 보전 항목에 대한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에 대한 검토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임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주민설명회 개최시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명하고, 많은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에 의해 오염총량할당 대상사업이므로 협의를 득하시기 바람

2021. 5. .

심의위원 : (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산청군

<b>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b> (남강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b>□ 총괄 의견</b>
<input type="radio"/>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 환경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의 개발은 최소화하고 하천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될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b>□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b>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input type="radio"/> 산청군은 남강의 상류지역으로서 남강의 수질영향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산청군내의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오염 총량관리지역, 폐수배출제한지역 등의 법적 규제지역이 평가에 포함될수 있도록 가능한 넓은 지역을 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기 바람
2. 토지이용 구상안
<input type="radio"/> 의견없음
3. 대안
<input type="radio"/>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input type="radio"/>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input type="radio"/> 주민이 본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의견을 낼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안내하기 바람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input type="radio"/> 의견없음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1 . 5. 24.
심의위원 : (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의령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강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 의견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은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작성되었음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대상지역은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사료됨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3. 대안

대안은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사료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평가항목 등 관련 내용은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사료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주민설명회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하천 권역별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의견 없음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1. 5. .

심의위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함안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강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공사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 및 생태계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가 시작되면 최대한 단기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 피해를 방지를 위하여 비산먼지 억제조치, 소음 및 진동 유발 장비(브레이커 및 발파 작업 등) 사용 시 피해가 예상되는 작업구간 살수 및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 등 여러 가지 피해방지시설을 강구 및 설치하여 공사로 인한 주변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것.

○ 해당지역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으므로 공사로 인한 피해(환경피해 및 농업용수 수질오염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토지이용구상안 생략으로 검토 불가

3. 대안

○ 자연과 유사하며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수립할 것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도로, 농경지 등의 접근단절 및 수확 불편이 없도록 토지이용항목 철저 검토

○ 주민들의 농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공사 중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농로개설 필요

○ 공사 시 하천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농업용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각 읍면사무소에 통보하여 이장단 회의 시 주민설명회 개최 내용 및 사업내용을 최대한 알려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것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공사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공사기간 최대한 단축할 것
  - 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농작물 식생 피해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조치를 철저히 할 것
  - 공사 시 소음 또는 진동을 유발하는 작업이 있을 시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작업 내용을 공지하여 최대한 협의 후 작업할 것
  - 수질오염총량 대상으로 부하량 할당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함
-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1. 5. 27.

심의위원 :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자연보호연맹 진주시협의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강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전반적으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토지이용 구상안

특이사항 없습니다.

3. 대안

대안설정에 의견이 없으며, 향후 사업내용이 바뀔 때 추가적인 대안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진양호 인근 및 남강의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평가범위 및 방법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진주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5. .  
심의위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강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국가 하천인 남강과 관련, 친환경적 측면의 중요성 대두와 함께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커짐에 따라 하천 기본 계획의 재정비는 불가피한 사업으로 제출된 평가 준비서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 지역인 함양 위천 합류점에서 산청, 진주, 의령을 거쳐 함안군 대산면까지의 대상 지역 선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 토지이용 구상안

○ 대상 지역 내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겨울철새도래지 및 야생생물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 구역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임.

3. 대안

○ 제출된 평가 준비서 명시된 대안처럼 토지이용의 긍정적 영향 측면과 생태계 훼손과 지형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 항목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선정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해 생물 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평가 범위와 방법을 설정해야 할 것임.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관계 법령에 따라 평가서를 공고 및 공람 그리고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야 하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임.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본 하천기본계획이 여울마자 등 경호강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임.

2021. 5. 27.

심의위원 : \_\_\_\_\_ (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의령군 주민대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강·남강댐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의견

계획하는 하천이 친환경적이 될 수 있도록 하천부지 활용 등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하는 철저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이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이견없음

3. 대안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이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특히 농촌의 경우 주민 생활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행정망을 이용하는 등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임

6. 기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이견 없음

2021. 5. 27

심의위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함안군 주민대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강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총괄 의견

남강 정비로 인한 하천의 생태 환경 변화에 초점을 두어 하천의 자연친화적 개발은 주민의 타당성 및 건강자원의 활용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함안군 유림면 위천항차림 - 함안군 대상인 남양항차림 포함함.

2. 토지이용 구상안

정비구역내 생목 보육구역 - 천사마을, 상하원 보육구역은 보존하고 주민생존이 용이한 지역은 지역주민의 불리성을위하여 고수부지 공회하수원.

3. 대안

계획 바깥에 대한 의견은 없으며, 다만 수안 방범에서는 공회하수원 유역의 수변지역은 자연친화적인 자연사살생방법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개발 기동 계획(안)에 특별한 의견이 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설명 및 공청회는 가능하면 정비구역내 유·변안위로 계획 포함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특별한 의견이 없음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1. . . . .

심의위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경남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강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 총괄 의견**

-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국가 2050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등 기후위기 극복이 국정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립되는 남강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건전한 이용을 목표로 했던 과거와 달리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중점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향후 경남도민의 취수원 다양화를 위한 핵심자원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평가 항목과 범위, 방법을 보다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평가항목범위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각 항목별 검토의견 및 문제점을 토대로 작성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이견 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내용 없음

3. 대안

- 토지이용 구상안 등 행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 검토 불가능함.
- <표4-3 대안검토>(47페이지)는 기후위기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핵심의제로 대두된 현 상황에서 하천기본계획이 재해방지, 탄소흡수원 보호,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보전에 초점을 맞춰야 함. 지역주민 복리증진 등 수변부 활용·개발을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남강 하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표5-3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52페이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항목의 예측·분석방법이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상 현황 파악이 2회씩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남강 유역(특히 전주~함안)은 타 하천에 비해서 생태계와 경관이 잘 보전된 지역임에도 관련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문헌조사와 법정보호종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준하는 생태계 정밀조사를 제안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이견 없음

※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이견 없음

※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이나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대안 기술

2021. 5. 27.

심의위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